

[사 건 명] 행심 2016-9

##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

청구인 : ○○○

피청구인 : ◇◇초등학교장

[주 문]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.

[청구취지] 정보공개 의무이행

[재결이유]

### I. 사건개요

- 가. 피청구인은 2016. 1. 28. 사건조작으로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한 내역이 있는지에 대해 ◇◇초등학교(이하 ‘이 사건 정보’ 라 한다)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 하였으나,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.
- 나.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 공개 불통지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2016. 3. 17. ♠♠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였고, 2016. 3. 28. 우리위원회에 이관되었다.

### II. 청구인의 주장

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- 피청구인은 청구내용이 정보공개 대상정보가 아니라면 정보법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고, 보유하지 않은 정보면 정보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여, 청구취지에 맞게 공개해야한다.

### Ⅲ. 피청구인의 주장

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-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 건이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3항과 관련하여 본교의 교무·교육행정·민원업무와 일절 관련이 없고, 보유·관리하지 않은 정보에 해당하며, 청구내용이 욕설 및 개인적인 내용이 난무하여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, 학기말과 학기초에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공개가 지연되었다. 따라서 이 청구는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으며, 정보가 부존재 함을 통지한다.

### Ⅳ.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

#### 1. 관계법령
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, 제3조

#### 2. 판 단

가.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- 청구인은 2016. 1. 28.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,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.
- 청구인의 의무이행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으며, 정보가 부존재 함을 답변하였다.

나. 이 사건 처분의 위법·부당함에 대한 판단

- 1) 「행정심판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

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, 같은 법 제5조제3호,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, 제3호,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‘정보’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·도면·사진·필름·테이프·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,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,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,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,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. (대법원 2006. 1. 13.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)

- 2)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,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,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,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의 의무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.

## V. 결 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